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56437 판결 [우선매수청구권 확인의 소]

전 문

원고타이헤이요시멘트 주식회사

피고1. 한국산업은행

2. 주식회사 신한은행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4.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유한회사

변론 종결2016. 4. 29.

판결 선고2016. 5.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에 적힌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의 2006. 6. 28.자 약정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시멘트 등 제조 및 판매, 토목건축재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쌍용양회'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보통주 20,828,960주(지분율 25.94%)와 우선주 1,250,000주(의결권 부활, 지분율 1.55%) 합계 22,078,960주(지분율 27.49%)를 소유한 쌍용양회의 최대주주였다. 그리고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TCC Holdings Labuan, Inc.는 쌍용양회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 3,910,050주(지분율 4.87%)를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유한회사(아래에서는 위 각 피고를 '피고 산업은행', '피고 신한은행', '피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한앤코시멘트'라 하고, 위 각 피고를 통틀어 '피고 산업은행 등'이라 한다)는 쌍용양회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들로, 쌍용양회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가 종료되면서 구성된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아래에서는 '주식매각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이다(피고 한앤코시멘트(분할 전 대한시멘트 주식회사)의 경우, 2012. 7. 30. 쌍용양회의 채권금융기관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출자전환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산업은행 등이 소유하고 있는 쌍용양회 발행주식과 그 주식 중 출자전환 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에서는 피고 산업은행 등이 소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국산업은행	11,090,842주(13.81%)	11,090,842주
주식회사 신한은행	10,024,000주(12.48%)	10,000,000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8,460,950주(10.54%)	8,460,950주
한앤코시멘트홀딩스 유한회사	8,030,320주(10.00%)	7,500,000주
합계	37,606,112주(46.83%)	37,051,792주

나. 쌍용양회의 임시주주총회와 원고의 가처분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 산업은행 등은 2015. 6. 19. 쌍용양회에 대하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의 추가 선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고, 2015. 7. 21.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비합30026호)에 쌍용양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쌍용양회의 이사회는 2015. 8. 19.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카합81043호)에 피고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피고 산업은행 등은 원고에게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5명이 추가로 선임되면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원고의 경영권이 박탈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10. 6. 이 사건 약정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5. 10. 21.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쌍용양회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쌍용양회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의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받았고, 원고의 노력으로 쌍용양회가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게 되자 쌍용양회의 채권금융기관들은 향후에도 원고의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2005. 9. 2. 주식매각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이 사건 주식 매각시 원고에게 경영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식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6. 6. 28. 원고에게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함을 명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원고는 주식매각협의회 구성원들과 묵시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약정의 당사자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약정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원고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라. 그런데 피고 산업은행 등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협의를 진행 중이던 2015. 6. 10. 원고의 우선매수권이 박탈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원고의 피고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마. 이에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약정의 유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 전부가 2016. 4. 15. 한앤코10호 유한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그리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4. 15.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한앤코10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약정의 대상이 되는 쌍용양회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의 유효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제3자인 한앤코10호 유한회사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

판사이진용

판사한상술

별지